

차량공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한 제도입니다.

등급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	2009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2등급 : 해당없음, 3등급 : 00년 ~ 16년기준, 4등급 : 88년 ~ 99년기준
2, 3, 4		2등급 : 해당없음, 3등급 : 09년9월 이후 기준, 4등급 : 06년 기준
5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2002년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향후 차량공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1등급)·페널티(5등급) 보완·강화 예정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지원 안내

- * 근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 목적 : 도심 대기질 개선 및 녹색교통중심 수요관리
- * 범위 : 한양도성 내부 16.7㎢²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기희동, 종로1·2·3·4기동, 종로5·6기동, 이희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 희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 시기 : 2019.7월(시범운영), 12월(과태료 부과)
 - 매일 06시 ~ [19시~21시]
 - 대상 : 배출기사 5등급 차량 (전국 245만대)
 - * 위반시 과태료 : 50만원 (1/2감감)
 - * 거주자 · 생계형(저소득층) 지원
 - 거주자 :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 지원 DPF 우선지원
 - 생계형(저소득층) :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지원, DPF 100%지원



*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시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 후 확정

「자동차친환경등급제」란?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한 제도입니다.

등급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	2009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2등급 : 해당없음, 3등급 : 00년 ~ 16년기준, 4등급 : 88년 ~ 99년기준
2, 3, 4		2등급 : 해당없음, 3등급 : 09년9월 이후 기준, 4등급 : 06년 기준
5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2002년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 향후 차량공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1등급)·페널티(5등급) 보완·강화 예정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공해 사업 안내

2019. 02. 15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5등급 차량 제공해 조치

매연저감장치 부착비 90% 내외 지원,

조기폐차 시 최대 165~최대 3,000만원 지원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한도 상이함.
<관련문의>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1577-7121 /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LPG차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 1톤 화물차

- 어린이 통학차량 ⇒ LPG차 전환 : 500만원
- 1톤 화물차 LPG 신차구입 : 400만원



전기 · 수소차 지원 전기 · 수소차 구매시 보조금 지원

- 전기차 - 승용(최대 1,350만원), 0.5톤 경형화물(1,650만원)
이와 별도로, 배출기사 5등급 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대당 50만원 추가 지원(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의 경우
대당 100만원 추가 지원)
- 수소차 - 수소차 구입 시 3,500만원 보조금 지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이것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2월 15일부터 서울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과 간접,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제한뿐만 아니라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친환경차(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제한일시	2019. 02. 15.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대상차량	5등급 차량 (DPF 부착,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차량 제외)
유예대상	수도권 이외차량, 충총량 2.5톤 미만 차량은 2019.5.31.까지 유예
벌칙	과태료 10만원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CCTV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조치시, 수도권노후경유차운행제한(LEZ),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고태로)의 대상이 됩니다.
단속여부를 떠나서 시민 건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많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Q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령요건과 안내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다음 조건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중 2개 시·도 이상에서 충족될 때 17시경 발령됩니다(수도권 재난문자 발송).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까지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 발령조건: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 조건 충족 시
① 시 행 전 일 : 50 $\mu\text{g}/\text{m}^3$ 초과(0시~16시 평균), 시행당일: 50 $\mu\text{g}/\text{m}^3$ 초과(예보)
② 시 행 전 일 : 경보권역 중 한곳 이상 주의보 또는 경보발령, 시행당일: 50 $\mu\text{g}/\text{m}^3$ 초과(예보)
③ 시 행 일 : 75 $\mu\text{g}/\text{m}^3$ 초과(예보)

※ 서울시 미세먼지 문자 서비스를 받길 원하시면 유선(02-3789-8701)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한 제도입니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이 노후 경유차에 해당되며, 경유차량은 연료별 발암 위해도가 99%로 절대적이고 신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15~21배 이상 많이 배출하고 있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필요합니다.

Q 저공해조치에 폐차와 저감장치(DPF) 부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유자의 차량 관리상태, 향후 교체 일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감장치는 2년 의무사용기간이 있어 2년 내 탈차시 차주가 전여기간에 따라 보조금 회수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조기 구매 또는 교체획이 있을 경우에는 저감장치 부착보다 폐차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에는 향후 폐차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5등급 차량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 차량의 5등급 여부 확인은 흠페이지 또는 쿨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검색창: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홈페이지 | emissiongrade.mecar.or.kr 쿨센타 | 1833-7435 | 서울시 다산풀(120)